

— 구미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3년 6월 17일

나. 제안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6월 17일

라. 상정일자 : 2003년 6월 21일

제8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복지환경국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여성발전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명시된 자치단체의 책무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문화하고
- 지역사회 모든 영역에 양성평등과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등 구미여성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여성정책 관련법의 세부기준 제시와 실천의지 명문화
 -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, 여성관련 통계 및 조사, 여성의 시정참여 확대, 양성평등의식의 제고, 여성의 복지증진, 모성보호 강화 등 여성정책의 종합적인 사항 규정
- 구미여성발전협의회 구성 및 기능 확대
 - 여성정책의 전반에 대한 자문과 여성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심의

○ 여성관련 유사조례의 폐지

- 구 미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

라. 참고사항

-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
-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,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
- 타시군 제정조례(경기도 용인시,의왕시,과천시, 강원도 원주시 등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여성발전기본법 등 여성관련 법령에 명시된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사항에 대한 실천의지를 명문화한 제정조례안임.
- 또한, 여성정책의 세부시행 규정으로써 여성정책의 기본계획 수립, 분석평가, 시정의 참여확대, 양성평등의식의 제고, 여성복지 증진, 여성발전위원회 및 기금의 조성 관리 등
-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